

# 2020년도 제3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20. 11. 20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 - 심의위원 : 신창환 위원(분과위원장), 김연희 위원, 심장섭 위원, 위정현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 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3건(안건번호 제2020-155643호~155712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안전번호 제2020-155643호~155712호{‘모바일도도파일’ 사이트의 ‘(영화)물란(2020)’ 등 83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B 위원: 금번 심의 안전인 영화 "물란", 방송 "플란더러" 등 총 83건은 불법 복제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써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
- C 위원: 이번 회 심의 대상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웹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서 저작권법 제133조의 3 소정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D 위원: 안전번호 제2020-155643호~155712호{‘♥♥♥♥♥♥♥♥’ 사이트의 ‘(영화)물란(2020)’ 등 83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0년 제31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 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11. 27.

분과위원장 신창환

위원 김연희

위원 심장섭

위원 위정현